

2025년도 기업자율형 창업프로그램 참여기업 2차 모집공고

2025년도 울산광역시와 한국동서발전(주)이 지원하는 '기업자율형 창업프로그램'의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울산지역 창업·벤처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6월 16일

울산광역시장, 한국동서발전(주)사장, 울산테크노파크원장

1. 지원개요

- (사업명) 기업자율형 창업프로그램
- (지원규모)
 - 지원금액 : 최대 17백만원 이내
 - 지원규모 : 8개사 내외
 - 기업부담금 : 최종 지원금액의 10% 이상, 부가세 별도
- (지원기간) 2025. 7. ~ 10. (3개월)

2. 지원대상(신청기업)

- (지원자격) 공고일 현재 기준, 아래 공통 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개별 요건을 충족한 기업
- (신청자격 요건)

구분		신청자격 요건
공통	1	· 창업 7년 이내
	2	· 「창업기업 ¹⁾ 」 또는 「벤처기업 ²⁾ 」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기업
	3	· 본사·공장·지사·연구소 중 1개 이상 사업장이 울산광역시 내 소재하는 기업
개별	4	· 지원분야(업종): 아래 분야 중 해당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 ① 에너지·신재생에너지·발전·에너지 효율화 분야 및 전후방 연관 분야 ② AI/IT·재난·안전·바이오·헬스 분야 및 전후방 연관 분야 ③ 울산 주력산업(조선·자동차·정밀화학) 및 전후방 연관 분야

○ (신청제외 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사전 지원 제외

- 신청기업이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사업에서 정하는 신청의 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분야 과제를 제출한 경우
- 공고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사업장(본사, 공장, 지사, 연구소)이 소재하지 않은 경우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 관리 중인 기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공고일 기준 유사 정책 자금을 통한 사업 또는 유사 과제로 수혜 중(예정인 자 포함)인 자
- 정부지원금 혹은 지자체, 민간지원금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기업
- 참여의 제한을 받고 있거나 이의 조치를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경우

3. 세부 지원내용

○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항목)

- 최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1개 또는 1~4개까지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패키지 지원)

구 분	프로그램	지원항목	비고
에너지혁신 지원	에너지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진단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비용 지원 - 저효율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 - 노후화된 에너지관리 시스템 교체 - 공장, 사무실 등에 에너지 절감이 필요한 설비교체 - 기존 공정 중 노후화된 설비교체 또는 공정개선 ※ [예시] 냉각 공정개선을 통한 냉각수 사용량 절감, 고효율 인버터 신규 설치(또는 교체)를 통한 전력 사용량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전문진 단기관이 발급한 에너지 진단* 결과 제출 필수 - 설비교체 가능

	에너지전환 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에너지전환 관련 기술개발 비용 지원 -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한 공정개선, 전환 등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 수소,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 [예시] 풍력 발전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필수설비 기술개발, 고효율 탄소 포집 설비 개발 	
사업화지원	시제품제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용화 추진 중인 기술 또는 신규사업 아이템의 설계 및 제작지원 - 시제품 또는 시금형 제작을 위해 필요한 재료비, 외주용역비 지원 - 전시회, 수요기업 대상 홍보용 시제품 제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산형 금형제작, 단순 완제품 양산, 자산성 물품구입 불가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권, 실용실안, 특허 등 지적재산권 출원 지원 외 전후방 단계 지원 - IP 인프라 지원: 특허성 분석, 특허 출원 - IP 전략 지원: 동향분석, 회피설계, 선행기술조사 등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작성 - IP Biz 지원: 보유 특허 평가, 기술소개자료 작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납료 지원 불가 - 지적재산권 '등록' 지원 불가
	국내외 공인 인증 취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품분석·인증 지원: 샘플·시제품의 분석 및 각종 인증(공공시험·인증기관 필수) - 제품인증: KS마크, KD마크, GD마크 등 - 조달청등록 조달청 우수제품,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GR마크, 환경마크, 성능인증, K마크 등 - 신기술인증: 우수조달제품, 성능인증, KC, NET, NEP, GS, KS마크 등 - 해외규격인증: CE, CCC, ROHS, UL, ASM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O 인증 제외
	기술이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공공 우수기술 이전을 통한 수요기술 확보 지원 - 기술이전계약서 첨부 필수 ※ 울산TP의 중개를 통해 기술거래계약이 체결된 기업에 한함(문의처: 052-219-8730) ※ 기도입된 기술 또는 협약 전 기술(기술이전 계약체결이 완료된 기술)은 지원 불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기술 이전비용은 지원 불가
마케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시장진출을 위한 시장조사 지원 - 시장정보, 기술동향 조사·분석, 마케팅 전략 수립, 유통채널 발굴 등 - 상품 및 브랜드 디자인 개발 지원 - 제품디자인 개발, 상품포장 디자인 제작·개선, 목업(Mockup)개발, 브랜드(CI, BI) 개발 - 시장확대를 위한 판로개척 지원 - 온라인 사이트(웹) 및 앱 개발, 국내 전시회·박람회 참가(부스임차비, 장치비), 홍보물(카탈로그 및 지류 홍보물, 홍보영상, 홈페이지) 제작 		

* 에너지 진단이란 에너지 이용효율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행위로 전문 진단기관에서 진단받는 것을 말함

** 에너지 진단 결과가 있는 기업은 기존 진단 결과 제출, 진단 결과가 없는 기업은 협약 후 1개월 내 진단 결과 제출 필수

○ (사업비 구성 및 지급방식)

- 총사업비는 지원금과 기업부담금으로 구성
-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 이상 산정(현금 부담, 현물 불가능)
-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기업에서 별도 부담
- 사업비는 견적서를 근거로 구성하며, 신청서 제출 시 증빙자료로 견적서 제출 필수
- 기업에서 총사업비를 선집행하며, 최종완료평가 이후 울산TP에서 기업으로 사업비 직접 지급(후정산)

4.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신청서접수 → 사전검토(필수) → 발표평가(필수) → 현장평가(필요시) → 선정통보

○ (사전검토)

-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 및 제출 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후 발표평가 가부 결정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 제한 여부, 지원과제 중복성 여부, 채무불이행 및 기업 재무 부실 위험 여부 등을 검토

○ (발표평가)

- 사업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5인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발표평가 진행

* 평가위원회는 각 사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pool에서 무작위 추출법을 이용하여 구성

- 신청기업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과제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과제참여자가 대신할 수 있음
- 평가위원은 아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총 발표시간은 10분, 질의응답 5분으로 진행

○ (평가항목)

① 사업화지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항목별 평가내용
지원 필요성 (30)	타당성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역량 및 장비, 시설, 인력 전문성 등 자원 보유 정도 ■ 제품 또는 기술의 부재로 인한 문제 인식과 해결방안의 적정성
	필요성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또는 기술 관련 시장현황·전망에 따른 미래 성장 가능성 ■ 기술 또는 사업화 지원의 필요성 및 시장파급력
사업화 역량 (50)	보유 기술의 우수성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또는 기술의 내재화 및 확보 수준 ■ 제품 또는 기술개발 기간 및 방법·일정의 구체성, 수익화 가능성
	사업화 추진계획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화 목표시장의 구체성 및 성장 가능성 ■ 사업화 추진계획 및 예상 비용의 적정성 ■ 경쟁사 대비 시장경쟁력 확보 방안의 구체성
	성과목표의 구체성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 성과지표 산출의 적절성과 구체성 ■ 과제 결과물 활용도
사업화 계획 (20)	추진일정 및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계획 수립 여부 및 타당성 ■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의 구체성 ■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합계		100	-

② 에너지혁신지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항목별 평가내용
지원 필요성 (30)	타당성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사업화 실적 및 운영역량 ■ 장비, 시설, 인력 전문성 등 자원 보유 정도
	필요성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또는 기술 관련 시장현황·전망에 따른 미래 성장 가능성 ■ 기술 또는 사업화 지원의 필요성 및 시장 파급력
에너지 혁신성 (50)	에너지 절감 필요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사용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에 따른 지원사업 필요성 ■ 에너지 절감 시 발생하는 비용 혜택의 적절성
	전력다소비 기업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용 계약전력 1,000kW 초과(20점) ■ 산업용 계약전력 500kW 초과 ~ 1,000kW 미만(16점) ■ 산업용 계약전력 100kW 초과 ~ 500kW 미만 (12점) ■ 산업용 계약전력 10kW 초과 ~ 100kW 미만 (8점)
	에너지 절감 효과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과제를 통한 에너지 절감 효과 및 에너지 절감에 따른 기대효과
	추진 의지 및 기대효과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 사업담당자의 과제 추진 의지 및 사업화 역량 ■ 신규 일자리 창출 가능성 및 해당 산업 내 경제적 효과·발전 기여도
사업화 역량 (20)	사업화 추진계획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화 목표시장의 구체성 및 성장 가능성 ■ 사업화 추진계획 및 예상 비용의 적정성
	성과목표 및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화 목표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 성과지표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절성과 구체성 ■ 과제 결과물 활용도
합계		100	-

○ (선정기준)

구 분	평가 종합평점 산출방법	선정기준
발표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계산함 - 최고 또는 최저점수 중 같은 점수가 2개 이상 나올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제외하고 계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기업 중 상위기업부터 선정 -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선정기업을 결정함 - 해당 사업 평가기준 및 평가표에 따라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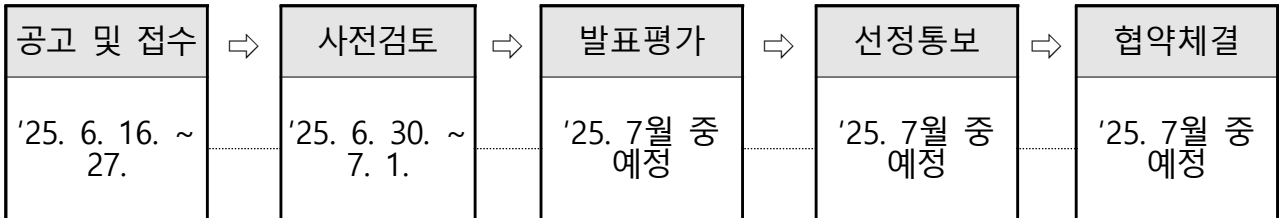
○ (평가결과의 조정)

- 평가결과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시 평가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음
- 사업비는 당초 신청한 사업비 이하로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또는 평가위원 의견에 따라 선정기업의 신청서(계획서)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음

5. 추진일정

○ 신청서접수 : 2025년 6월 16일(월) 10:00 ~ 27일(금) 17:00

○ 선정평가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5. 6. 16.(월) ~ 27(금)

○ (접수기간) 2025. 6. 16.(월) ~ 27.(금) 17:00 까지

○ (신청방법)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 접수

- (접수처) <https://platform.utp.or.kr/>

- (유의사항)

① 접수 전 사전 회원가입 필수

② 신규 회원가입 시, 관리자 승인 대기시간 발생함

③ 접수 시 등록된 담당자 E-mail 및 휴대전화 번호로 평가 일정 등 안내가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연락처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7.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필수 여부	부수	비고
1	신청서 및 과제 계획서	필수	1부	서식1
2	제출서류 목록표	필수	1부	서식2
3	신청자격 자가진단 확인서	필수	1부	서식3
4	신청기업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1부	서식4
5	사업자등록증(본사) ※ 단,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u>울산광역시</u> 가 아닌 경우 <u>울산광역시 내 사업장 소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추가 제출 필수</u> (사업자등록증(지사) 또는 공장등록증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	필수	1부	-
6	2022년 ~ 2024년 국세청 제출 재무제표 ※ 전년도 결산 미완료 혹은 재무제표 발급이 불가할 경우, <u>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제출</u>	해당시	1부	-
7	2022년 ~ 2024년 고용보험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연도별 개별 발급 필수 (검색기준 설정 : <u>매년/12/31 ~ 매년/12/31</u> (※ 연말 기준 고용인원 확인을 위함))	필수	1부	-
8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업 공고 시작일 이후 발급본	필수	1부	-
9	거래처(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 ※ 기술이전의 경우, 기술이전확약서로 대체 가능함	필수	각1부	-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8.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본 사업의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구비서류의 첨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누락 서류가 발생할 경우 접수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 결과는 개별로 통지하며,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사업수행

중이라도 선정을 취소 및 사업을 중단할 수 있음

- 지원금은 선정평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협약일 이전 발생한 비용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은 사업비 및 기업부담금으로 집행할 수 없으며, 참여기업에서 별도로 집행하여야 함

9.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은 각 사업별 지침 및 관련 법령, 울산테크노파크 지원사업관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형사소추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지원하는 모든 울산테크노파크 지원사업을 일시 중단함

10. 이의신청

- 이의신청 범위
 - (이의신청 가능 사항)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된 경우, 과제 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명백한 행정 오류가 발생한 경우
 -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이의신청이 가능
 - (이의신청 불가 사항) 선정결과 통보, 평가위원 선정, 사업비 결정, 평가규정 및 절차, 평가방식(발표/현장) 등에 이의가 있는 때
- 이의신청 방법
 - (신청기한)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 5일 :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 (제출서류) [서식5. 이의신청서] 작성 후 공문과 함께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으로 이메일(son166@utp.or.kr, 052-219-8554) 제출
 - (작성방법) 신청기업 혹은 신청자 명의의 공문과 신청인 인적사항, 통보일, 평가결과, 이의신청 사유 등을 명확하게 이의신청서에

작성 후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에는 통보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유의사항)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대면평가, 현장평가 등 과제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 절차가 완료된 후에 1회만 가능

11. 관련법규

○ (관련규정)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울산테크노파크 지원사업 관리지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

12. 문의처

구분	담당자	소속	연락처	이메일
사업담당자	손리라	기업지원단	052-219-8554	son166@utp.or.kr

붙임

붙임1. 신청서 및 기타서류 각1부. 끝.